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 경 만**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A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 1.~12.31)들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적해석(근기 68207-732, '97. 11. 27)은 입사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Q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A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여야 함.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2007. 1. 7~2007. 2. 6)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 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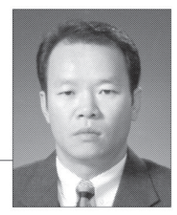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

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금 5천만원에 1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저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인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가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7. 11. 88다카21029)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317조)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 문 환**

Q 나는 13세예요. 내 고민은 양쪽 유방에 몇 줄기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엎드려서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심한 주름이 있는 친구 한 사람은 유방이 매우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창피해요. 특히 학교 체조부 친구와 함께 사워를 해야 할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내게 이런 주름이 생긴 이유와 학교 개학 전에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 신장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유방의 성장기 어느 때에 피부 조직이 당겨지는 위치에 나타난다. 이것은 조직을 분리시킨다. 다른 예로서 임신 중에 유방과 복부가 커감에 따라 신장선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임신선이라고 한다. 남녀 다같이 체중이 증감한 후에 팔, 가슴, 복부, 엉덩이에 비슷한 줄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호르몬이 관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전문가들은 임신 중 증가된 높은 수준의 프로제스테론이 단순한 체중 증감보다 임신선을 출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은 나이의 여성에게는 사춘기의 호로몬의 변동이 관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신장선이 취짐 자세와 같은 일시적인 압력의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연구 문헌의 어디에도 지적되어 있지 않다. 아쉽게도 신장선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보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바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신장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당신 자신이 친구의 것보다 과대평가 할 수도 있고 최근의 것(그래서 빛깔이 짙다)이라서 더 신경이 쓰이는 지도 모른다.

【킨제이 보고서】 발췌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 재 우**

Q 정전은 왜 발생하며,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나요?

A 정전은 천둥, 낙뢰, 폭풍우 등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객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부단히 연구노력하고 있사오니 전력사업에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정전 피해보상 전력사업은 발전소·변전소·송배전선로 등의 방대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설비사업으로 방대한 설비유지에 따른 시설자체의 완전한 사고 예방이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발생된 특정고객에게 재해보상을 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에 흡수되어 일반고객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免責)】제3항)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용 자가발전기나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적절한 피해방지장치를 시설하시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휴전과 정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A 휴전은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 이설공사, 전선교체공사, 설비의 예방점검 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기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며, 정전은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객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의해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의·학·상·식

포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민 도 식**

조류독감과 닭고기

원래 조류독감바이러스는 고기 자체나 알에는 없고 분변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한다. 조류독감이란 닭, 오리, 칠면조나 야생조류 등의 가금류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유행성 독감이 있듯 늘 자연계에 존재해왔다. 단지 올해는 맹독성이 강한(고병원성)유형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급습한 것뿐이다. 국내에는 약병원성 조류독감이 1996년 처음 발생했고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발생한 바가 없었다.

요즘은 TV화면에 양계장의 닭들이 집단 폐사 당하고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땅속으로 매립시키는 장면을 볼 때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없어지지만 알고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 1997년 홍콩 2003년 2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도 전염 됐는데 이들 경우에는 양계종사자, 수의사, 방역요원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에서만 발생했다. 다행히도 이번 충북 음성 등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양계장 종사자들이 잠복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다.

원래 조류독감바이러스는 고기자체나 알에는 전혀 없고 분변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한다. 또한 열에 매우 약해서 섭씨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 80도에서 1분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100도로 끓일 경우 즉시 사멸하므로 닭모래집이건 살코기건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지금까지 닭이나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됐다는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건도 없다.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아예 산란을 하지 못하므로 날달걀을 먹어도 전혀 문제없으니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실의에 빠진 양계업자를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이유 없이 닭고기, 오리고기 및 달걀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90)

세·무·상·담

세무사 **박 운 종**

【신기술개발에 공동 투자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Q 우리 법인(주식회사)는 자동차 관련 부속을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납품하는 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귀 법인과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계약(RSP)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상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는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술개발의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구분에 따라 달리 계산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당해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와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여 과거 4년간 발생한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 및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종(031-872-6116)

보일러설치 난방시공1종면허·중고보일러매매

대표 정남용

산업용보일러 및 최신기계제작에
필요한 설비구축으로
유지공장 · 제지공장 ·
섬유공장 · 벽돌공장
아파트와 시설재배
농가용 온수보일러에 적합

중앙설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9-5
전 화 : 031-533-2272
F A X : 031-535-0422
휴대폰 : 011-212-0998
080-091-9000